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162호

의 안 명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의 결 일 2024. 4. 8.

주 문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4월 8일

위 원장 유 철 환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 지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2024. 4.

국민권익위원회

ACRC

목 차

Ⅰ. 추진개요 ····· 1

Ⅱ. 관련현황 ····· 2

Ⅲ. 문제점 분석 ····· 5

(1) 금고 선정기준 부재 ····· 5

(2) 협력사업비 제공 경쟁 심화 ····· 10

(3) 협력사업비 관리 불투명 ····· 16

Ⅳ. 개선방안 ····· 19

(1) 금고 선정기준 마련 ····· 19

(2) 협력사업비 경쟁 제한방안 강구 ····· 20

(3) 협력사업비 공개 확대 ····· 21

Ⅴ. 조치사항 ····· 23

〔참고〕 관련규정 ····· 24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 추진배경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 자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령, 지침, 자체 내규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운영**

* (금고) 지자체, 국·공립대학의 장 등이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비용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통상 '주거래은행'이라고도 함

○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다 경쟁에 따른 **협력사업비* 과다 납부 또는 각종 특혜 관행화**

* (협력사업비) 금고 약정 시 맺은 협력사업계획에 따라 은행이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현금('19년 기준 약 1조 1,135억원 규모)

- 지자체 외에는 협력사업비 납부 및 집행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운영과정상 투명성 확보 한계
- 지자체, 국립대학과 달리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은 세부 선정 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임의로 특정 은행과 계약

○ 이에 따라 **금고 지정·운영과정상 공정성 확보**를 통해 부패 유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추진경과

○ '23. 10 ~ 11월　현황 파악 및 공공기관 실태조사

○ '23. 12 ~ 1월　개선방안 마련

○ '24. 2 ~ 4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원위원회 의결

Ⅱ. 관련현황

□ 금고 지정·운영 근거

< 기관별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운영 근거 >

구 분	금고 지정 근거	세부 선정기준	협력사업비 기준
지자체 (243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교육지자체 (17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기준」 (교육부 예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기준」
국·공립대학 (46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4조의2(금고업무약정)	「국립대학 금고지정기준」 (교육부 예산집행 지침)	「국립대학 금고지정기준」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34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기재부고시)」 제23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X	X
지방공기업 (412개)	X (직영기업만 규정*)	X	X
지방 출자·출연기관 (837개)	X	X	X

* **지방직영기업(252개)**은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에 따라 관리자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금고 지정, 공고

○ (지자체)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지자체 조례

○ (국·공립대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국립대학 예산회계 집행 기본지침'(국립대학 금고 지정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재부 고시) 제23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 **(참고 : 중앙정부)** 「국고금관리법」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행**하되, 금융회사를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절차(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 통상 지정계획 공고, 제안서 제출·평가, 금고약정 순으로 지정

계획수립	⇒	공고	⇒	제안서 제출	⇒	심사·평가	⇒	지정 및 약정
지정기간, 평가방법, 위원 등		항목, 배점, 일정, 제출자료 등		신용도, 안정성, 예금·대출 금리, 협력사업계획 등		위원회 구성, 평가·심의표 작성		약정서 작성

※ 지자체의 경우 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지정 가능

☐ 지정기준(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자치단체(대학)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지역주민(대학구성원)의 이용 편의성

○ 금고업무 관리 능력

○ 지역사회(대학) 기여 및 자치단체(대학)와 협력사업

☐ 협력사업비 공개

○ (지자체·대학) 현금으로만 출연 가능하며,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 (행안부, 교육부 기관별 금고지정 기준)

※ 지자체(교육지자체 포함)의 경우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년대비 20% 이상 증액될 경우 행안부(교육부) 보고

○ (금융기관) 협력사업비(출연금)는 이사회 사전심의를 받고, 건별 적정성에 대해 연1회 이상 보고해야 하며, 5개 사업연도 중 10억원 이상 제공할 경우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

※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Ⅲ. 문제점 분석

1 금고 선정기준 부재

○ 공기업 등*은 세부 선정기준 없이 기관별 제각각 운영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금전사무 대행기관(금고) 지정 근거는 있으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자체 내규 없이 일부 수의계약, 장기간 계약으로 정하는 사례 발생

【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3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

기관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기업 등 금고 지정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조사대상 30개 기관 중 **2개 기관만 내규 마련·운영** 중
-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공모결과 유찰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한 기관 제외 시 **17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선정(56.6%)**
- 계약기간을 4년내로 제한하는 지자체, 대학과 달리, 30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계약연장 등을 통해 **특정은행과 5년 이상 장기 거래**(4개 기관은 설립 이후 지속 거래하거나, 계약기간을 확인 불가)
- 일부는 금고 외 **수시로 금리검토를 통해 자금예치**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

기관명	금고	계약일	기간(연장여부)	선정방식	기준	비고
A기관	신한은행	'21. 1월	3년(3년 1회)	수의	-	4차례 유찰
B기관	하나은행	'16. 9월	7년(1년단위)	공모	-	
C기관	KB국민은행	'20. 1월	5년	수의	-	2차례 유찰
D기관	신한은행	(설립이후)		수의	-	주무부처 지정 추정
E기관	기업은행	'20. 11월	5년	수의	-	3차례 유찰
F기관	우리은행	'23. 3월	3년(1년 2회)	공모	내규	
G기관	신한은행 외 1	'22. 12월	2년(1년단위 자동)	수의	-	일부 확인 불가

기관명	금고	계약일	기간(연장여부)	선정방식	기준	비고
H기관	기업은행	'20. 11월	5년	수의	-	3차례 유찰
I기관	우리은행	(확인불가)		수의	-	금리검토(4개 자금 예치은행)
J기관	전북은행	'22. 1월	3년	공모	-	
K기관	우체국은행	'23. 1월	1년(매년연장)	수의	-	주무부처 지정, 매년 연장
L기관	국민은행	'95. 8월		수의	-	설립 시 이용
M기관	국민은행	'16. 2월	5년(1년단위 자동)	수의	-	
N기관	하나은행 외 21	'95. 12월		공모	-	금리, 대출한도 검토
O기관	우리은행	'19. 5월	3년(1년단위 자동)	수의	-	1년단위 자동연장
P기관	하나은행	'22. 10월	3년(1년 2회)	공모	-	
Q기관	농협은행	(확인불가)		수의	-	금리검토(5개 자금 예치은행)
R기관	농협은행	'01. 3월		수의	-	설립 당시 지정
S기관	하나은행	'03. 4월	2년(2년단위)	수의	-	금리검토(6개 자금 예치은행)
T기관	농협은행외 1	'18. 8월	3년(1년단위 자동)	공모	-	
U기관	수협	'19. 8월	2년(1년단위)	수의	내규	
V기관	기업은행	'20. 1월	5년(1년)	공모	-	금리검토(10개 자금 예치은행)
W기관	우리은행 외 17	(설립이후)		수의	-	금리검토(18개 자금 예치은행)
X기관	농협은행	'15. 9월	5년(자동연장)	수의	-	금리검토(7개 자금 예치은행)
Y기관	우리은행 외 2	'06. 11월	(자동연장)	(확인불가)	-	금리검토(3개 자금 예치은행)
Z기관	우리은행 외 3	'14. 3월	1년(매년연장)	수의	-	
AA기관	하나은행	'17. 11월	5년(1년 1회)	공모	-	
BB기관	농협은행	'19. 7월	3년(1년단위 자동)	수의	-	
CC기관	하나은행	'22. 8월	3년(1년단위 2년)	공모	-	
DD기관	우리은행	'22. 3월	2년(2년)	수의	-	금리검토(2개 자금 예치은행)

* '23. 11월 32개 기관 대상 서면조사 실시, ㈜SR, 근로복지공단 2개 기관 자료 미제출

○ **지방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근거, 세부 선정기준 모두 불명확**

* (지방공기업 등)「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자·출연기관

- 자체 내규 없이 대부분 내부방침(결재문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준용하거나 지자체와 동일한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지정

< 지방공기업 등 금고 지정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조사대상 24개 기관 중 **6개 기관만 내규 마련**, 이중 **3개 기관은 지자체 금고를 지정**
- **12개 기관은 공모**로 지정, 이중 **8개 기관은 지자체 조례 기준 준용**
- **12개 기관은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 이중 **6개 기관은 지자체 금고 지정**

기관명	금고	계약일	기간(연장여부)	선정방식	기준	비고
a기관	하나은행	'20. 1월	4년	공모	-	
b기관	우리은행	'22. 3월	4년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c기관	신한은행 외 1	'14. 7월		공모	내규	금리검토(1개 자금 예치은행)
d기관	신한은행 외 1	'16. 7월	1~3년(1년단위 자동)	수의	-	
e기관	농협은행	'20. 3월	3년(1년)	수의	-	지자체 금고 동일
f기관	농협은행	'21. 8월	4년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g기관	농협은행	(설립이후)		수의	내규	지자체 금고 동일
h기관	대구은행	'22. 3월	3년	수의	내규	지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
i기관	부산은행	'20. 1월	4년(1년)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j기관	부산은행	(설립이후)		수의	-	금리검토(6개 자금 예치은행)
k기관	농협은행	'22. 1월	3년	수의	내규	지자체 금고 동일
l기관	국민은행	'23. 1월	4년	공모	-	
m기관	농협은행	'19. 1월	4년(1년)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n기관	지역농협	(설립이후)		수의	-	설립당시 지정 은행
o기관	하나은행	'22. 12월	4년	공모	내규	지자체 조례 준용
p기관	경남은행	'20. 1월	4년	수의	내규	지자체 금고 동일
q기관	우리은행	'19. 1월	5년(1년)	공모	-	
r기관	신한은행	'18. 5월		수의	-	지자체 금고 동일
s기관	전북은행 외 4	'23. 1월	3년(가능)	수의	-	
t기관	제주은행	'21. 10월	3년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u기관	제주은행	'23. 5월	3년(가능)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v기관	우리은행	(설립이후)		수의	-	지자체 금고 동일
w기관	하나은행	'21. 1월	3년	공모	-	지자체 조례 준용
x기관	하나은행	'22. 1월	4년(가능)	수의	-	

* '23. 11월 34개 기관 대상 서면조사 실시, 강릉관광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대구동구문화재단, 광주인생평생교육진흥원, 고래문화재단, 새마을 재단, 전라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등 10개 기관 자료 미제출

○ **일부는 근거 없이 금고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 등 혜택 수령**

- 12개 공기업 등은 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 재무관리 시스템 용역, 임직원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

※ (현금) 4개 기관이 총 2,150백만원, (현물) 3개 기관이 연간 약 1,700백만원 상당을 제공 받음

< 공기업 등 협력사업비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협력사업비 내역		집행내역
	현금	용역, 금리 등	
C기관	250백만원(5년)	기관 금리우대	사회공헌협력기금 집행
E기관	-	시스템 유지보수(연 85억원)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F기관	600백만원(3년)		○○재단 출연(사회공헌)
H기관	-	시스템 유지보수(연 85억원)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I기관	-	시스템 유지보수(월 30만원)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O기관	-	기관 예금 및 임직원 대출 금리 우대	
R기관	-	당좌차월 한도 혜택 부여	
U기관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V기관	-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AA기관	700백만원(6년)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장학금 등 사회공헌
BB기관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CC기관	600백만원(3년)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직원 휴양시설, 복지 등

- 지방공기업 등도 12개 기관이 협력사업비와 임직원 금리혜택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현금) 7개 기관이 총 955백만원, (현물) 4개 기관이 약 115백만원 상당을 제공 받음

< 지방공기업 등 협력사업비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협력사업비 내역		집행내역
	현금	용역, 금리 등	
a기관	180백만원(4년)	방역물품(60백만원 상당)	복지재단 출연 등
b기관	260백만원(4년)	기관 예금금리 및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 수수료면제	행사비 등 집행
f기관	140백만원(4년)	쌀기부(40백만원) / 임직원 금리 우대 등	지역 복지시설 기부 등
g기관	-	임직원 금리 우대	
h기관	-	기관 예금금리 우대 / 임직원 수수료 면제	
i기관	200백만원(4년)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확인 불가
k기관	-	기관 예금금리 우대	
l기관	-	콘도 이용권 / 기관 예금 금리 우대	
m기관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o기관	130백만원(4년)	기관 예금금리 우대 /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자체 기부사업 집행
p기관	40백만원(4년)	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 임직원 장학금	자체 사업비 집행
q기관	-	홍보 키오스크(10백만원) / 경조사 물품(4.5백만원)	
t기관	-	시스템 구축 / 기관 예금금리·임직원 대출금리 우대	
x기관	5백만원(4년)		사업비, 직원복지비 집행

【 (언론보도 사례) 은행들 공기업 등에 협력사업비 제공 】

- 우리은행이 **한 공단의 금고**로 선정되어 **'18년 ~ '21년 3월까지** 공단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약 963억원**('21. 3월,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
- 국민은행이 **한 종합병원의 금고**로 선정되어 **'17. 8월 ~ '22. 7월까지 약 43억원**의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21. 3월,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
- 임직원 대출 금리 낮춰주고 선물 주고, **공공기관 금고 경쟁 치열**('19. 5월, 언론보도)
- ○○재단은 **금융혜택 서비스를 조사**한 뒤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지정('19. 5월, 언론보도)

서비스 항목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마이너스)	연 3.2%	연 3.97%	연 3.3%
대출금리(정기대출)	연 2.9%	연 3.47%	연 3.0%
기부금(연간)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기타 서비스	공기청정기 등	안마의자 등	장례지원

2 협력사업비 제공 경쟁 심화

○ **협력사업비의 실질적 영향력으로 은행 간 현금납부 과당경쟁 초래**

- 지자체, 대학 금고지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9,039억원 수준(31개 광역·교육지자체, 10개 기초지자체, 18개 국립대 기준)

* 금고협력 사업비, 주거래은행 출연금, 대학 후원금 및 발전기금의 형태로 제공

< 광역지자체 금고 지정 협력사업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광역지자체) 17개 기관 협력사업비 규모는 3~4년간 약 7,502억원 수준
- (교육지자체) 14개 협력사업비 규모는 3~4년간 약 274억원 수준

(단위 : 백만원)

기관 (광역)	금고 은행	계약 기간	협력 사업비	비고	기관 (교육)	금고 은행	계약 기간	협력 사업비	비고
가	신한	4년	266,400		①	농협	4년	3,300	
나	부산,국민	4년	40,500	1,2금고	②	부산	4년	5,000	
다	대구,농협	4년	23,800	1,2금고	③	농협	4년	1,900	
라	신한,농협	4년	123,500	1,2금고	④	농협	4년	2,700	
마	광주,국민	4년	6,000	1,2금고	⑤	농협	4년	800	
바	하나,농협	4년	14,800	1,2금고	⑥	농협	4년	720	
사	경남,농협	4년	13,500	1,2금고	⑦	농협	4년	5,000	
아	농협,하나	4년	11,410	1,2금고	⑧	농협	4년	1,350	
자	농협,국민	4년	101,000	1,2금고	⑨	농협	4년	719	
차	농협,신한	4년	8,300	1,2금고	⑩	농협	4년	1,600	
카	농협,신한	4년	80,000	1,2금고	⑪	농협	4년	1,200	
타	농협,하나	4년	16,300	1,2금고	⑫	농협	4년	1,550	
파	농협,전북	4년	10,800	1,2금고	⑬	농협	4년	550	
하	농협,광주	3년	10,500	1,2금고	⑭	농협	3년	1,000	
거	농협,대구	4년	11,900	1,2금고	※ 광주, 세종, 충남 교육청 자료 미제출				
너	농협,경남	3년	10,000	1,2금고					
더	제주	3년	1,500						

< 기초지자체, 대학 금고 지정 협력사업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기초지자체) 10개 기관 협력사업비 규모는 3~4년간 약 772억원 수준

※ 226개 전체 기초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약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국립대) 18개 대학 협력사업비 규모는 4~20년간 약 491억원 수준

※ 전체 64개 국·공립대학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6개 대학은「국립대학회계법」제정(2015년 3월) 이전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약정 유지 상태

※ 9개 대학은 정기예금 또는 교직원 대출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받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기관	금고 은행	계약 기간	협력 사업비	비고	기관	금고 은행	계약 기간	협력 사업비	비고
ㄱ	우리	4년	7,500		⑸대	전북	4년	1,000	
ㄴ	신한	4년	14,000	1,2금고	⑹대	수협	20년	5,000	
ㄷ	중소기업	4년	18,000		⑺대	광주	4년	5,000	
ㄹ	농협,신한	3년	16,000	1,2금고	⑻대	국민,기업	4년	720	1,2금고
ㅁ	농협	4년	1,000		⑼대	신한	45개월	200	
ㅂ	전북,농협	3년	4,079	1,2금고	⑽대	신한	4년	2,432	
ㅅ	경남,농협	3년	4,300	1,2금고	⑾대	광주	4년	5,000	
ㅇ	농협,하나	4년	1,255	1,2금고	⑿대	전북	4년	4,400	
ㅈ	농협,국민	4년	8,200	1,2금고	⒀대	농협	20년	5,500	
ㅊ	농협,신한	4년	2,900	1,2금고	⒁대	국민	10년	600	
⑴대	농협	20년	3,000	건물	⒂대	하나	44개월	4,200	
⑵대	신한	10년	4,000	1,2금고	⒃대	농협	13년	1,690	
⑶대	대구	4년	4,800	금리우대	⒄대	국민	4년	1,000	
⑷대	농협	4년	120		⒅대	국민	4년	480	

※ 서울대 협력사업비 '없음' 의견 제출, 부산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12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협력사업비 배점이 축소되었으나, 적은 배점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 규모가 실질적으로 금고 선정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지자체 의견

【 (참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내용('12. 6월) 】

- (권고대상) 행안부, 교과부, 금융위, 지자체 등
- (주요내용)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삭제,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 비중 하향 조정, 중장기 협력사업비 당위성 검토(금리위주 경쟁유도),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협력사업비 집행결과 보고 및 공개

【 (언론보도) 금고 희비 가른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재점화('23. 7월) 】

- ○○대학 금고 50여년 만에 광주은행에서 신한으로 변경,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금 75억원을 써냄에 따라 금고로 선정

【 (지자체 의견) 협력사업비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보완 필요('23. 11월) 】

- 협력사업비에 예시보다 배점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고 과다 출연(전년대비 20% 이상 증가)시 보고하는 규정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협력사업비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보완 검토 필요

- 국립대학의 경우 금고 지정시 협력사업비 배점기준이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은행들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 경쟁 중

【 (언론보도) 4대 은행, 대학 금고 전쟁('23. 4월) 】

- 4대 은행이 지난해 대학에만 약 342억원 자금 투입, 대학 협약은 미래 고객 확보에 유리. 신입생들의 은행을 통해 체크카드 발부나 등록금 납부를 하며, 졸업후에도 모교 주거래 은행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언론보도) 12개 은행이 192개 대학에 특별이익 3,401억원 제공('16. 9월) 】

(단위 : 백만원)

구분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제일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수협
대학수	25	57	46	2	11	22	2	10	6	2	8	1
금액	48,360	36,995	163,895	8,280	26,015	20,623	8,140	10,930	8,006	7,990	910	100

< 지자체, 국립대학 금고 지정기준(요약) 비교 >

항목(요약 정리)	세부항목(요약 정리)	배점 비교		
		지자체	교육지자체	대학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대평가 ▪ 주요 경영지표 현황	8 19	8 19	10 21
2. 대출 및 예금금리	▪ 정기예금 예치금리 ▪ 공공예금 적용금리 ▪ 기관 대출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7 6 4 3	11 7
3. 주민(대학구성원) 이용 편의성	▪ 관내지점수 등(구성원 이용편의성) ▪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추가배점) 6(추가배점) 7(추가배점)	7 6(추가배점) 7(추가배점)	5 7 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 자금관리 능력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전산처리능력 ▪ 보안센터(회계관리) 운영 능력	6 8 8 3	6 8 8 3	6 8 8
5. 지자체(대학) 기여 및 협력사업 능력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 항목 추가 및 추가 배점 불가**	**5** **2**	**5** **2**	**5** **4**
계		100	100	100

- 기금(2금고)의 경우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할 필요성이 크고, 금리 추가 배점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일반예산(1금고)과 동일한 평가 기준 적용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3. 11월, 서면조사) 】

- (광역지자체) 일반·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1, 2 금고에 배분하여 관리
- (기초지자체) 2개 지자체만이 기금을 분리하여 제2금고로 별도 지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협력사업비 수령(ㄴ지자체(2금고) 2,500백만원, ㅈ지자체(2금고) 2,400백만원)

< 광역·기초지자체 중 1,2금고 협력사업비 비교('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협력사업비(백만원)		구 분	협력사업비(백만원)	
	1금고	2금고		1금고	2금고
다	22,000	1,800	하	7,500	2,550
라	27,675	3,200	거	8,500	3,400
마	4,000	2,000	너	7,000	3,000
바	11,600	3,200	ㄴ	11,500	2,500
사	11,000	2,500	ㄹ	800	800
아	5,200	6,210	ㅂ	3,930	149
자	80,000	21,000	ㅅ	3,300	1,000
차	6,100	2,200	ㅇ	550	705
카	64,000	16,000	ㅈ	5,800	2,400
파	7,500	3,300	ㅊ	1,100	1,800

○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으로 인한 위법사례 발생

- 은행 간 경쟁 과열로 자금횡령, 뇌물제공 등 위법사례 발생

【 (언론보도 사례) 금고 지정 과정에서의 위법 사례 발생 】

-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18년 서울시 금고지정 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도하게 제공(4,250억원)**하고 이를 **이사회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여 **'기관경고'와 과태료 21억 3,110만원** 부과('21. 3월)
- '14년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가 **'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250억원 → 555억원), B은행이 시금고 재선정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시장 후원회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수사('16. 11월)

- 과도한 협력사업비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일반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비판 제기

【 (언론보도 사례) 은행 간 협력사업비 출혈 경쟁 심화 】

- 은행이 각 기관에 제공하는 출연금 약정규모가 **'18년 5,882억원에서 '19년 1조 1,135억원**으로 급증('19. 12월)
-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1,500억 이상을 지자체에 제공**('19. 4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6년	18,743	4,290	48,525	6,040	50,812	4,744	5,795	6,717	2,051	2,660	2,087	400
'17년	19,805	3,990	38,505	6,230	55,853	4,908	6,715	6,893	5,057	720	1,927	400
'18년	19,755	3,690	38,416	6,210	53,338	5,398	6,310	9,668	4,542	332	2,004	400

- **4대 시중은행이 2년간 출연금 6,000억** 배팅, 올 1분기만 1,42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과당경쟁에 소비자 피해 우려, 현실적 대책 필요**('23. 4월)
-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쓰면 은행 수익구조상 **예금 고객에게는 금리를 적게 주고 대출 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20. 8월)

3 협력사업비 관리 불투명

○ **협력사업비 집행내역 등 공개 미흡**

- 지자체, 국·공립대학은 협력사업비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기관만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협력사업비 규모 공개

<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등 공개 현황('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지자체	대학
조사대상	17개	10개	14개	18개
공개기관수	5개	3개	10개	12개
공개기관	나, 라, 자, 거, 너	ㅁ, ㅂ, ㅇ	②, ③, ⑤, ⑥, ⑦, ⑧, ⑨, ⑫, ⑬, ⑭	(1), (3), (4), (7), (8), (9), (11), (12), (15), (16), (17), (18)

<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등 공개 사례('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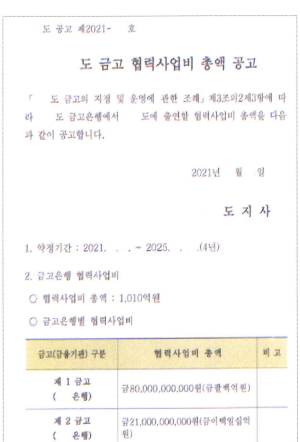

도 공고 제2021- 호

도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 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도 금고은행에서 모에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월 일

도 지 사

1. 약정기간 : 2021. . . ~ 2025. . .(4년)

2.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 협력사업비 총액 : 1,010억원

○ 금고은행별 협력사업비

금고(금융기관) 구분	협력사업비 총액	비 고
제 1 금고 (은행)	금80,000,000,000원(금팔백억원)	
제 2 금고 (은행)	금21,000,000,000원(금이백일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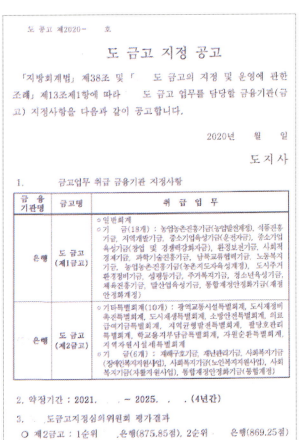

도 공고 제2020- 호

도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 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월 일

도 지 사

1.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금 융 기관명	금고명	취 급 업 무
은행	도 금고 (제1금고)	○일반회계 ○기 금(18개) : 농업농촌공익기금(농업농촌공익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농업농촌공익기금(농촌지도사육성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개발기금, 주거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일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은행	도 금고 (제2금고)	○기타특별회계(10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생교육진흥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자원순환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기 금(6개)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시설계정),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시설계정), 사회복지기금(사행성행위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 약정기간 : 2021. ~ 2025. . .(4년간)

3.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제2금고 : 1순위 은행(875.85점), 2순위 은행(869.25점)

< 협력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확인 기관('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지자체	대학
조사대상	17개	10개	14개	18개
확인기관수	1개	1개	7개	5개
확인기관	더	ㅁ	③, ④, ⑥, ⑦, ⑧, ⑨, ⑬	(2), (3), (10), (13), (17)

* 기관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외부에는 결산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

【 (언론보도) 지자체 협력사업비 공개 미흡('20. 8월) 】

■ '17년 지자체의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 공시 여부 조사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중 3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9곳만 공개**

-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은 협력사업비 운영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금고 선정 및 협력사업비 제공 관련 의혹, 비판 제기

※ 공기업 등은 1개(S), 지방공기업 등은 2개(a, p)만 주거래 은행 지정 공개

※ 공기업 등 4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7개 기관은 협력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외부에는 일반 사업 결산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지자체 등은 금리혜택 등 일부 추가 협약이 있음에도 약정서 내 상호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세부내역 대외 유출 제한

< ○○구 비밀유지 조항 사례('23.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제22조(기밀 유지) ① "은행" 은 본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약정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은행의 협력사업비 제공내역 공개 또한 형식적**

-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17년부터 은행이 협력사업비 등 이익 제공 현황(5년간 10억원 초과)을 공시하도록 근거 마련

>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
> 5.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 협력사업비 등을 제공받은 자의 업종만 공시함으로써 제공 대상 기관명을 알 수 없어 내역 공개의 실효성 부족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제1항 제2호 】**
> ①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 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 3. 제공목적
> 4.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

- 민간 내역과 별도로, 공공부문에 제공한 협력사업비 등 이익 내역을 기관별로 분류하기 어렵게 공시되어 전체 현황 파악이 곤란

【 은행의 이익제공 공시사례(전국은행연합회 자료) 】

◈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의 공시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 4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단위 : 백만원)

제공 받은자[주1]	제공 목적	제공 내용[주2]	경제적 가치						합계[주4] (A+B)
			기 제공한 재산상 이익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				
			제공 일자[주3]	경제적 가치[주4]	제공이 확정된 일자[주3]	제공 기간[주3]	제공 연도	경제적 가치[주4]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3)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2020.04.24.	600	2018.12.31.	2019.01.01. ~ 2021.12.31.	2021	600	1,200
			합계(A)	600			합계(B)	600	

Ⅳ. 개선방안

1 금고 선정기준 마련

○ 금고 지정 근거 및 세부 선정기준 마련

- 지방공기업 등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자체 근거(내규 등)를 마련하도록 지도·관리

-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이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 실시

※ 세부기준·항목에 대해서는 기관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등을 준용

※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등 지도·감독 기관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 시달

【 세부 선정기준 주요내용 예시(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 **】**

- 경쟁방법(공모)으로 정하되, 기관별 여건상 필요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1/2 이상 참여한 심의위원회(또는 기관 이사회 등) 의결에 따라 수의방법 허용(관내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거나 법령 등에 따라 예치해야 할 경우 등)
- 지정·운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연장 제한(기관여건에 따라 필요 시 내규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 연장여부(연장기간) 규정)
- 경쟁방법(공모)로 정할 경우 평가기준(배점, 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 기준 등) 제시
  * (평가기준 예시) 예금 및 대출금리, 고객(국민)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국가 또는 지역사회 기여도, 기관과 업무협력 계획(과거 협력실적 제외)
- 금고 지정 현황, 협약내용, 협력사업비 외부 공개 의무화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에 반영**

2 협력사업비 경쟁 제한방안 강구

○ 금고 평가기준 상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

- 협력사업비가 금융기관 비용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배점기준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국립대학도 배점기준을 현행 4점에서 지자체 수준(2점)으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도 향후 금고 선정기준 마련 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

> **【 세부 선정기준 주요내용 예시**(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 **】**
> - 협력사업비의 배점 기준을 최소화(지자체 기준 이하)하여야 한다.
> -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만 출연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의 명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기금에 대해서는 금리 항목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지자체·국립대학 기금의 금고 지정 시 금리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도록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예시 추가

※ (예시) 기금 예치에 한해 금리기준 항목의 추가배점 가능함을 명시(○○점)

-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도 향후 금고 선정기준 마련 시 기금의 금리 항목 평가 배점 확대

> **【 세부 선정기준 주요내용 예시**(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 **】**
> - 특정 기금 예치시 금리를 비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한다. (단, 원금보전 상품인지 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 '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등 개정**

3 협력사업비 공개 확대

○ 협력사업비,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

-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협력사업비 총액 등 공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 및 국·공립대학에 대한 제재 등 지도·감독 실시

- 협약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등 협약과 금고 지정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관리

※ 금고 지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협약서 내 비공개 조항 삭제 지도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 '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등 개정**

○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제공 공개 내용 개선

- 금융기관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

⇨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및 '별책서식' 제122호 서식 개정**

< 개선방안 예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현 행	개 선(안)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 ~ 4. (생략)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일 경우 기관명을 공시한다) 3. ~ 4. (생략)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참고기관 : 지자체(광역, 교육, 기초), 국·공립대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 조치내용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1. 금고 선정기준 마련	○ 공기업 등, 지방공기업 등 금고 지정 근거 보완 및 세부 선정 기준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에 반영	기재부, 행안부
2. 협력사업비 경쟁 제한방안 강구	○ 금고 평가기준 상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 ○ 기금에 대해서는 금리 항목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 '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등 개정	교육부, 행안부
3. 협력사업비 공개 확대	○ 협력사업비 공개 관련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지도·감독 실시 ○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준'에 내용 추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 '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 ' 등 개정 ○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공개 시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 ⇒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은행업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및 '별책서식' 제122호 서식 개정	교육부,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 조치기한 : 2025. 6월

참고 관련규정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 ·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 ·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 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재부 고시)

제23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기관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1.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 · 물품 · 편익 등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 · 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 조화 · 화환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칠 것. 다만, 이사회(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종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세칙)

제18조의4(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 제공목적
4.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③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1. 총 칙

[1] 목 적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자본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자본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5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교육부 예규)

1. 총 칙

1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교육비특별회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③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시·교육청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④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시·도교육청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⑤ 금고약정

- 교육감과 해당 시·도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함다),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금고의 수

○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시·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 등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반영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규칙(안) 예시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외평가기관(4점)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17)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규칙(안) 예시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시·도교육청 대출금리(4)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시·도교육청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교특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 다.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교특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추가배점 다.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학교회계 관리능력(3) - 항목추가
5. 교육기관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7점)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5) 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2) *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교육기관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7점)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5) 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2) *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현재 시·도교육청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10.1.부터 시·도교육청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도교육청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③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시·도교육청에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교육부에 보고

○ 시·도교육청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교육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교육감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식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공개

○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5 금고의 지정

○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교육감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교육감은 교특회계 ·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교육감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별 표>

시·도교육청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도교육청 대출금리	(4)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지정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교특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교특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5. 교육기관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		7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계획 *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 사항	시.도교육청 자율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 가능('20~)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20~)	11	

□ 국립대학 금고지정 기준(교육부 국립대학 예산집행 기본지침)

1. 총칙

1-1. 목적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1-2. 용어의 정의

○ (금고) 총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학회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 (산학협력단회계)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에서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 등을 위해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 (금고지정) 금융기관 중 국립대학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금고약정) 총장과 해당 국립대학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1-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국립대학의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1-4. 금고의 수

○ 대학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대학회계를 포함한 국립대학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단, 특정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높은 상품에 예치하되, 학생들이 납입하는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각종 납입금의 수납 편의상 별도의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되,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1-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대학회계 기준)를 나누지 않는다.

2. 금고의 약정방법

2-1.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3-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
- 대학에 대한 예금금리(18)
-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이용 편의성(20)
-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9)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항목 2(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항목 5(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2. '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총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에 편성한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4. 금고의 지정절차

4-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총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단,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4-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총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총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금고의 지정

○ 총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5. 금고약정 및 해지

5-1. 금고약정

○ 총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대학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서식] 00대학교 금고 약정서 참조(해당 대학에 맞도록 내용 변경 가능)

5-2. 금고약정의 해지

○ 총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총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기타

○ 총장은 본 기준 범위 외의 금고지정 추가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본 지침 이전에 자체지침 등을 마련하여 금고를 지정한 대학은 그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10	
	가-1. 국외평가기관	6	
	가-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나-1. BIS 자기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7	
	나-2. 고정이하여신비율	7	
	나-3. 자기자본이익률	6	
	나-4. 대손충당금적립률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2. 대학에 대한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1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3.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대학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이용 편리성	5	
	나. 대학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7	
	다. 대학회계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5. 대학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9	
	가. 대학 기여 실적	5	
	나. 대학과의 협력사업계획 ※ "대학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대학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정본입니다.

2024. 4. 9.

국민권익위원회

ACRC